

國
內

職務發明補償制度

○ ○ ○ ○ 株式會社

■ 職務發明補償規程事例

1. 職務發明補償規程

第1條 (目的) 이 규 trình은 特許法第17條 및 第18條의 규정에 의한 法人의 任員 또는 社員(以下 會社員 또는 被傭者라 함)의 職務發明에 관하여 規定함으로써 이를 保護 奬勵하여 研究意慾을 向上시키고 이로 인한 特許權을 合理的으로 관리 운영하여 會社의 發展은 물론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규 trình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號와 같다.

- 職務發明이라 함은 法人의 會社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發明한 것이 會社의 業務範圍에 속하고 또 그 發明行爲가 會社員의 任務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會社에서 發明 그 자체를 命令받아 이루어진 發明을 말하며, 研究開發部나 技術部社員이 研究開發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任務는 현재의 것은 물론이고 과거(발명 당시)의 任務도 포함된다.
- 業務發明(經營發明)이라 함은 會社員의 임무와 會社에서 취급하는 業務에 관계되는 發明을 말한다. 즉 自動車會社에서 總務部나 經理部의 會社員이 自動車의 商品에 關聯된 發明을 할 경우이다. 또 研究所나 技術部에서 나온 發明일지라도 兩者的 本務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多數人の 協力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얻어진 發明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 業務發明은 원칙적으로 自由發明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自由發明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發明以外에 會社員이 한 發明을 말한다. 즉 會社의 社員이

지만 自己의 職務에 관한 것도 아니며, 오로지 個人的 計劃이나 興味등에 의하여 한 發明을 말한다.

4. 發明者라 함은 職務發明을 한 會社員을 말한다.
5. 會社員의 定義는 社員, 臨時社員, 工員, 臨時雇傭員, 常勤嘱託을 말한다.

第3條 (權利의 會社承繼) ① 會社는 發明者가 한 職務發明이 實用價值가 있어 企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다.

② 發明者가 한 職務發明이 第3者와 共同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會社는 그 發明者가 가지는 權利의 持分만을 承繼한다.

第4條 (發明者에 대한 补償) 會社는 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權利를 承繼한 때에는 이 규 trình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补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5條 (補償金의 管掌) 前條의 규정에 의한 补償金支給에 관한 事項은 審議委員長의 提請에 따라 會社長이 이를 管掌한다.

第6條 (發明의 申告義務) 社員이 자기가 맡은 義務와 관련된 發明을 한 때에는 遲滯 없이 그 内容을 委員會幹事, 總務部長, 技術部長을 經由하여 會社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7條 (假承繼의 決定) ① 前條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받은 會社長은 그 發明이 職務發明에 속하는지의 與否와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會社長이 承繼(以下 假承繼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 會社長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決定內容을 書面으로 發明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8條 (權利의 讓渡) 發明者는 會社長으로부터 職務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假承繼한다는 決定의 通知를 받았을 때는 遲滯 없이 그 權利를 會社長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第9條 (出願) ① 前條의 규정에 의하여 特許를 받

을 수 있는 權利를 讓渡받은 會社長은 지체없이 特許局長에게 特許出願을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규정에 의한 特許出願은 會社長名義로 하여야 한다.

③會社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特許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 事實을 發明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0條 (發明者の 特許出願) ①發明者は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會社長이 特許를 받을 權利를 假承繼하지 아니하겠다는 通知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自己名義로 特許出願을 할 수 없다.

第11條 (審議要請) ①委員會幹事는 第9條의 규정에 의한 特許出願이 登錄查定되었을 때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第23條의 규정에 의한 職務發明補償審議委員會委員長에게 遲滯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④ 職務發明의 會社承繼決定에 대한 審議

⑤ 第5條의 규정에 의하여 支給할 등록 보상금의 審議

第12條 (特許權의 登錄) ①職務發明으로서 會社에서 承繼할것으로 決定되었을 때는 會社長은 지체없이 이를 會社名義로 特許登錄을 해야 한다.

第13條 (特許登錄의 通知) 前條의 特許登錄을 마친 會社長은 會社名義로 登錄된 事實과 支給하기로 決定된 登錄補償金의 内容을 發明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4條 (登錄補償金의 支給) 會社長은 發明者로부터 前條의 규정에 의한 补償金支給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支給하기로 決定된 登錄補償金은 發明者에게 支給한다.

第15條 (登錄補償金) 會社에서 承繼할것으로 決定한 特許權에 대하여는 그 發明의 優秀性 및 實用價值 등을 參酌하여 權利 每1件마다 다음各號의 登錄補償金을 發明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1. 特許權은 10만원 以上 100만원 以下

2. 實用新案權은 5만원 以上 10만원 以下

3. 意匠權은 1만원 以上 5만원 以下

第16條 (特許權의 處分補償金) 第12條의 규정에 의한 會社의 特許權을 讓渡, 實施, 許與 또는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特許權의 内容 및 收入金 등을 參酌하여 發明者에게 다음 각號의 补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1. 特許權의 實施를 有償으로 許與할 때는 그 實施料收入金의 2~5% 以下에 해당하는 金額

2. 特許權을 有償으로 讓渡한 때에는 그 代金의 2% ~5% 이하에 해당하는 金額

3. 職務發明을 會社 스스로가 實施하거나 또는 第3者에게 無償으로 實施를 許容한 때는 第1號의 규정에 준하는 金額

第17條 (特許權의 處分通知) 會社長은 第12條의 규정에 의한 特許權을 讓渡 實施 許與 기타 處分을 할 때에는 그 内容 및 收入金 등을 發明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8條 (處分補償金의 支給審議要請) 發明者は 前條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職務補償審議委員會委員長에게 第16條에서 定하는 特許權處分補償金의 支給審議를 要請하여야 한다.

第19條 (處分補償金의 支給) 會社長은 前條의 要請에 의하여 支給하기로 決定된 處分補償金을 發明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第20條 (補償金의 持分支給) 第15條 또는 第16條의 补償金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發明者が 2人以上일 경우에는 그 持分에 따라 支給한다.

第21條 (退職 및 死亡後의 补償) ①發明者が 轉職 또는 退職한 경우에는 第15條·第16條의 규정에 의한 补償金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額을 支給한다.

②發明者が 死亡한 경우에는 그가 支給받을 수 있는 补償金을 相續人에게 支給한다.

第22條 (補償金의 不返還) 發明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支給된 补償金은 그 特許가 無効로 된 경우에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特許가 背認에 의하여 無効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3條 (委員會의 設置) 職務發明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會社長 所屬下에 職務發明補償審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4條 (委員會의 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과 委員 9人 以内로 構成한다.

②委員會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專門家로 構成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25條 (委員長)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業務를 總括하고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委員長이 사고가 있을 때 副委員長이, 副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 先任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26條 (委員會의 審議事項) 委員會는 다음 각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② 第11條의 규정에 의한 職務發明의 會社承繼 決定에 관한 事項

④ 第30條의 규정에 의한 自由發明의 會社承繼 決定에 관한 事項

④ 第15條 및 第16條에 규정한 支給補償金 決定에 관한 事項

④ 職務發明 嘉獎에 관한 事項

④ 其他 必要한 事項

第27條 (委員會의 議事) ①委員長은 필요에 따라 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會議는 在籍委員(위원장을 포함한다)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③議長은 表決의 결과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28條 (幹事) ①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②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審議案件을 整理하고 그庶務를 處理한다.

第29條 (運營細則) 이 規定 外에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필요한 事項은 委員長이 定한다.

第30條 (自由發明의 承繼) ①自由發明에 대하여 發明者로 부터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權을 會社에 양도한다는 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定하는 職務發明의 承繼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會社에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경우에는 第15條 대지 第22條를 特許權을 承繼한 경우에는 第16條 대지 第22條를 각각 準用한다.

第31條 (發明者の 義務) 發明者は 그가 한 職務發明의 處分 또는 實施에 있어서 會社 또는 實施許與를 받은자가 필요로 하는 事項이 있을 때에는 이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第32條 (秘密保持) 發明者 또는 職務發明에 관한 業務에 從事하는 者는 그 職務發明의 內容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第33條 (實用新案 및 意匠에 관한 準用) 이 規程은 實用新案 및 意匠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7 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2. 職務發明補償規程施行細則

第1條 (目的) 이 規則은 會社職務發明補償規程(以下 規程이라 한다)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程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發明의 申告) ①規程 第6條에 의한 發明의 申告는 會社員이 現在 또는 過去 3年이내에 그가 맡은 業務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發明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業務와 관련된 發明의 申告書

2. 發明의 性質證明書

3. 發明明細書

②前項第1號의 業務와 관련된 發明申告書는 別紙 第

1號書式에 의한다.

③發明의 性質證明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1. 所屬會社의 業務
2. 發明者(會社員)의 任務
3. 發明의 性質
4. 職務發明與否
5. 發明의 實用性
6. 發明承繼에 관한 의견
7. 署名捺印

第3條 (審議要請) ①規定 第11條에 의한 審議를 要請할 때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提出하여야 한다.

1. 發明審議要請書
2. 發明明細書
3. 意見書
4. 特許證寫本

審議要請意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1. 發明의 性質
2. 發明의 實用性
3. 登錄補償金
4. 其他

第4條 (特許登録通知) ①規程 第13號에 의한 特許登録通知 및 支給하기로 결정된 登錄補償金의 通知는 別紙 第3號書式에 의한다.

第5條 (變動事項의 通知) 規程 第15條 및 第16條에 의한 补償金을 받은자는 다음 各號 1에 해당하는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는 그事實을 證明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會社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1. 第7條에 의한 통지를 한 후 當該人の 身上 등의 變更事項

2. 規程 第21條에 해당하는 사항

第6條 (自由發明의 讓渡申請) ①規程 第6條에 의한 申告對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自由發明 또는 이로 인한 特許權을 會社에 讓渡하고자 하는 자는 會社長에게 다음의 서류를 提出하여야 한다.

1. 自由發明(特許權) 讓渡申請書

2. 發明明細書

3. 特許證寫本(特許權일 경우)

②前項 第1號의 讓渡申請書는 別紙 第4號書式에 의한다.

③第1項 2號의 發明明細書는 第2條 第4項에서 규정하는 事項과 당해 발명의 實用性을 記述한다.

④業務와 관련된 自由發明을 會社에 양도한다는 申請은 第2條의 규정에 의한 申告로서 이를 가름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施行規則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